

「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5월 2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5월 17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5월 1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가족복지과장)

가. 제안이유

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‘지역아동빈곤예방 위원회’를 두어야 하나,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‘아동복지심의위원회’에서 해당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‘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’ 추가(안 제2조제2항제6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
‘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’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
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,

○ 검토결과,

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제4항에서 자문기관(자문·심의)은
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
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,
상위법령에서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
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,
법률 저촉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